하여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용 클램프로 체결할 것

- (10) 충고가 4미터를 초과(단, 안전인증을 받은 동바리는 제외)하는 경우 및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.0 미터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와파이프서포트 조립 간격이 너무 좁아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의 동바리 구조로 변경하여야 한다.
- (11) 경사면 하부에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가.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·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
 - 나. 깔판·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·깔목은 단단히 연결할 것
 - 다.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연직도를 유지하도록 깔판·깔목 등으로 고정할 것
 - 라. 연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할 것.

5.3 콘크리트 타설작업 준수사항

- (1)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순서 등 타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작업전 청소 실시하고 조립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동절기 및 해빙기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상부에 직접 설치되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침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수하여야 한다.
- (4)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작업전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·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한다.
- (5)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·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